

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LPG용기 사용가구 금속배관 교체 안내

"고무호스는 노후·파손·이탈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한 **금속배관**으로 교체·설치하여야 합니다."



「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」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46호 제8조 제1항
[LPG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 고무호스가 설치된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]



모든 LPG용기 사용가구는 금속배관으로 교체·설치하여야 합니다.

- 지원대상 : LPG 사용가구 중, 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 (단, 사용자 자기부담금 20% 발생)
- 문의처 : 시·군·구 가스담당부서, 읍·면·동 주민센터,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(지사)

결취선

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

신청자 현황	성명	신청인과의 관계 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
	주소	(신주소) (구주소)	
	연락처	자택 / 휴대전화	
유의사항	(1) 시설개선비는 정부·지자체 지원금 80%, 본인부담금 20%(약 5만원)로 구성되며, 시공업체의 현장조사를 거쳐 본인부담금 납부 후 진행 (2) 금속배관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(3) 주택이 아닌 경우 제외 (4) 현장확인 후, 시설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		
위와 같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
2022. . . .			
신청인(대리인) 성명 :		(서명 또는 인)	



산업통상자원부

지방자치단체



한국가스안전공사